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2023년 9월 (전체위원회)

- ◆ 일시 : 2023. 9. 12.(화) 14:00 ~ 13:30
- ◆ 장소 : 프레스센터 4층 대회의실1
- ◆ 참석자 (19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과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 심의안건 (2건)
 1. 「건칠장」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추천 여부 심의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34호 봉화산도당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 검토사항 (2건)
 1. 「서울의 마을제사」기초 현황 조사결과 검토
 2. 「서울잡가」보유자 인정 조사 사전 검토
- ◆ 보고사항 (1건)
 1. 서도소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관련 조사결과 보고

- 000 과장
2023년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회)

- 000 위원장
위원님들 먼저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해주셔야겠는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진행에 대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의무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해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 시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 등의 기피 안내. 기피 신청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해당 없음)

○ 000 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과장님이 오늘 오셨고,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진행을 하시죠.

○ 000 과장

간사로서 제가 안건을 회부하는 건 하고, 나머지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개 심의 사항 중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건철장에 대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 추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입니다. 23년 7월에 손대현씨를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저희가 전문가 사전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아래의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고, 세부 전문가 의견은 붙여두었습니다.

신청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가 나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건철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다만 사전검토 결

과에 보면 건칠이 중간에 전승이 안되고 잠깐 떠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사전검토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실 사항은 서울시가 이 건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에 추천할지 여부입니다.

○ 000 위원장

전공하신 000 위원이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000 위원

제가 주로 작업을 협저탈되 칠기로 하는데, 지정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거예요. 다른 분야보다 역사가 짧은 것도 아니고, 유물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너무너무 정교한 협저탈되 불상들이 다 있는데, 사실 건칠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일본 이론 책으로 익힌 단어거든요. 일본만 쓰는 단어이고, 중국은 안씁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것도 우리 뿌리가 아닌 것 같고, 박물관에 유물도 다 건칠로 되어 있긴 하지만...이것은 초창기 연구하시던 분들이 다 일본 책을 보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우리 글로 전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유물은 너무 정교한 것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유물에 가까운 복원을 할 수 있는 실력있는 건칠하시는 분이 없느냐하면 사실 없어요. 저도 현대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 기법만 도입을 해서 현대적 조형 작업을 할 뿐이지, 불상을 만든다든가, 유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법의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하면, 사실 논문 같은 것을 보고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평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의 뿌리를 찾으려면 없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다보면 체계를 잡아서 교육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우리 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있거든요. 그냥 천을... ‘협’이라는 것은 ‘끼워넣는다’라는 뜻이고, ‘저’는 삼베나 모시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떤 가형태를 만들어서 계속 바르면 두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께만 두고 그 안의 것을 깨버

리는 거예요. 그것이 험저 탈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물이나 조형물로 많이 제작하는 작가들은 있습니다. 아주 능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적인 무형문화재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불상이 뿌리죠. 고려시대 때, 멀리는 신라시대까지의 유물로 보는 불상도 있거든요. 합천 해인사의 스님 불상 같은 거 보면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돌출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을까?

그러면 그릇을 만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유물에 그릇은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보물의 대부분이 불상들입니다. 다 보물이고, 안성에 있는 불상 한 점이 보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복원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여튼 그것을 제외하면 다 보물이거든요. 그 정도의 경지를 가지는 작품활동을 했다든지, 전시를 했다든지 보여준 사람들이 없어요. 최근에 몇 번 불상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봐야 첫 번째 해서 상 타고, 두 번째 해서 상 타고 하지만, 옛날 우리 유물에 비하면 조악해보입니다. 기술적으로...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해야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지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로 올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합니다. 지정은 국가가 고민해야하는 것이지 저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면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수준으로 봐서는 있어주고 싶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능력이 되든 안되든. 그것이 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지정이 되버리고 나면...

○ 000 위원

서울시 위원회가 건칠장을 국가에 올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

한 것이지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면 국가에서
종목 지정 가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 000 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점수가 높지만, 우리가 이 종목이 될건지 안될건지
판단을 한 후에 올려야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건칠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 용어고, 협저는 고려시대에 나오지만 중국용어예요. 우리나라에는 협
저라는 말이 없어요. 여말선초에는 좋은 작품들, 불상이 있어서 보물로 지
정이 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유물들이 없습니다. 그릇 등의 공예품도 낙
랑시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몇점 말고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협저탈퇴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좋은 건칠 불상들이 있었다지만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이미 단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 다
시 복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전 시기 우리 전통의 협저탈퇴의 기
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리는 쉬워요. 쉬우니까 복원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복원된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성
과가 없는 상태에서 요즘에 건칠 기법이 굉장히 부상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칠 기법이 전통 기술의 뿌리를 알기 어려울뿐더러 지금 당장 지정
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사라져서 보존이 안되는 건 아니예요. 건칠은 기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전칠기는 물론 기법 중의 하나인데 이걸 누가
말해도 우리나라 공예의 대표성을 땁니다. 건칠도 그 기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건칠만 지정을 한다면 다른 많은 기법들은 어떡해하는가? 함부로
지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하고 싶습니다. 누가 되든간에. 하
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종목 지정만 되면 응모를 많이 할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저불상을 잘 만드시는 분은 없고, 대부분 현대 공예품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더 연구성과가 나온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말씀하신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통은 분명한데, 유물은 분명하
지만, 그것의 기술적 맥락이 제대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 왔느
냐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최근에 단절되었다가 재현하거나 복원하는 것도 가
치를 인정해 주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된 과거의 우리의 기술적 맥락을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재현했을 때를 전제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이거는 일본에 우연히 공부하러 가서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너그럽게 보면 우리 것이 넘어간 것을 다시 귀환시켜 중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증거도 없고 현재로서는 일본의 기술을 가져다가 현대공예, 근현대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원래 건칠은 왜 불상에 집중이 됐냐면 불교의례에 초파일 이럴 때 요여에다가 작은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얹어서 탑돌이를 한다든가 이런 예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가볍고 혹시 넘어져도 견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칠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던져도 안 깨져요. 가볍고요. 그거 때문에 불상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그릇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건칠기법을 써서 만들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교 쪽에 집중돼 있는데 정작 불상을 건칠로 제대로 만든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게 전통 맥락인데 그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저도 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보면 고궁박물관에서 옥책함을 만드는, 옥책함 수리하는데 다 뜯고 하는데 보니까 삼베 바르고 칠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품활동보다도 문화재 수리기술 쪽에 건칠이 많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지 않나.

○ 000 위원

그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 000 위원

다른 겁니까?

○ 000 위원

건칠은 아예 지지체가 없어요. 나중에 제거해서.

○ 000 위원

그것을 빼낸다는 거예요, 삼베를?

○ 000 위원

완전히 빼서 옷칠층하고 처음에 겹겹이 쌓이면서 그것이 두께가 되는 거예요. 기벽이 되는 거예요.

○ 000 위원

탈태가 되는 거죠, 탈태.

○ 000 위원

그런데 보통의 여러 가지 유물에다가 칠을 발라서 옷칠을 하는 것은 나무가 세월이 가면 뒤틀리고 크랙이 가고 이렇게 온도와 습도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의 일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천하고 건칠에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칠장하고 나전장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칠장이 있는데 건칠이라고 해서 우리가 떠올렸을 때 칠장하고,

○ 000 위원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 000 위원

예. 그러지는 않고 그 부분도 또 의문이 드는 거죠.

○ 000 위원

그래서 칠장 안에는 사실은 아까 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방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베로 다루니까 삼베라고 해서 헝저 칠기라고 하는데 도자기에다가도 할 수가 있고 금속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고 하면 지폐 칠기가 돼야 하고 금전칠기가 되고 와전칠기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전공하신 선생님들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 000 위원
아니, 건칠 그것 자체는 참 좋은 유물인데 지금 시점에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건칠 자체를 고려 때까지, 아까 최 선생님 말씀은 고려 때, 조선 조 때 약간 중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로 보인다.
- 000 위원
근대철로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나는 건칠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 000 위원
워낙 문화재가 많으니까.
- 000 위원장
그리고 우리 앞서서 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할 때는 용어가 아마 건칠이라는 말이 일본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아마 이걸 모르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말은 칠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나주 심향사 보물로 지정할 때 보면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앞에다 건칠희랑대사좌상.
- 000 위원
전부 건칠로 썼어요.
- 000 위원장

건칠비로자나불좌상 해서 건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미 용어로 굳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건칠이라는 용어는. 다만 기술이 중간에 어떻게 전승되었고 단절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의견을 주셔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용어 정리 때문에 한국철예가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한 30년 되는 협회인데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용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토의를 하는데 사실은 옷칠에 대한 명칭도 중국이 하는 발음하고 일본이 하는 말하고 한국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루시라고 해서 그때 세계적으로 옷칠이 우루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 그래서 세계 공용어로 우루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재팬이라는 영어 단어도 사실은 중국이 차이나, 도자기라는 의미가 있듯이 재팬도 옷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도 칠이라고, 중국은 칠을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큰 대 자를 써서 그것을 옷칠이라고 하고 그냥 칠하는 것은 합성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칠 하면 합성칠로 알게 되니까 우리는 완전히 옷칠이라고 발음하자. 그래서 오래 전부터 옷칠이라고 써요. 칠이라고 안 하고.

○ 000 위원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000 위원

예. 그 정도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용어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건칠을 꼭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 000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견도 약간 있는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에 문화재로 활동을 하고 있죠?

- 000 위원
예, 하고 있죠.
- 000 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맞죠?
- 000 위원
예, 칠장으로요.
- 000 위원
칠장으로. 궁금한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추천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하겠죠.
- 000 위원
예. 합니다.
- 000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크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가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 추천을 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까? 여기서 이미 무형문화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서도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 000 위원
같은 종목은 아니니까.
- 000 위원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이 완전히 다르죠.
- 000 위원
어쨌든 칠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나전장이 있고 칠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면 크게 그런 게 없으면 추천을 해드리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우리는 다

시 새로운 좋은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 000 위원

제작년 정도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시창 종목이 왔었는데요. 지정 당시의 내용과 다른 것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당시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인정을 해드린 건데 당시와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본인이 국가로 가겠다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라는 정도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칠장 안에 건칠이 속해있는 것은 맞아요. 별개는 아닙니다.

○ 000 위원

그것도 생각해보셔야 하는 게 저희가 경기나 서도민요 같은 것을 논의할 때도 자꾸 종목을 쪼개서 여러 종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보유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모양이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자꾸 쪼개다 보면 위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런 것은 있죠.

○ 000 위원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 000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분 말씀 들어보게 되면 건철장이 국가에서 지정받기 어려워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은 그 지정여부는 국가에서 판단할 것이니까 우리가 올려서 다양한 논의를 한 자체를 굳이 막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청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지정에 관계 없이 한 번쯤 그런 기회를 준 자체.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정여부는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올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

안 올리면 모르겠는데 올리면 국가가 한 번쯤은 검토할 거 아닙니까?

○ 000 위원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 000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 올리면 또 서울시문화재위원님의 위신도 있잖아요.

○ 000 위원

우리 지자체도, 위원회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 000 위원

겪어보니까 위계는 안 따지더라고요.

○ 000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조사한 결과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사실은 거기 내용들이 나전철기에 대한 설명이지, 건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은 포인트가 벗어나 있거든요. 지금 어떤 유명한 작품들이 세계적인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저도 메트로폴리탄에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것은

협저칠기지만 그분들은 나전칠기예요. 안에 목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 000 위원

그 보고서 쓰신 분도 사실은 핵심을 벗어난 내용인 거예요.

○ 000 위원장

이 정도에서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무조건 올려서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이런 걸 올렸냐?’ 그런 말 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막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승시키는 길을 막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럴 때는 가부를 묻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진달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찬성 네 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물을 필요 없이 네 분이 찬성하시고 다른 분들은 대개 여기 기권도 있을 텐데.

○ 000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000 위원장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칠장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추천 여부는 부결로 하겠습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2023-03-002번입니다. 무형문화재 제34호인 봉화산도당곳에 대해서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관련한 안건입니다. 심의 신청하신 분은 두 분이세요. 이병환 씨와 박미수 씨입니다. 경과를 보시면 두 분이 신청하셔서 올해 4월에 현장조사를 1차로 했고 6월에 기량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량심사 한

점수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점수의 평균은 박미수 씨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수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한 80점 정도의 기준으로 항상 고민을 했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인정대상자 결정을 하는 심의를 토론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에 그때 우리 다 갔었는데 000 위원님께서 가셨으니까 한번 설명해주시죠.

○ 000 위원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약간 놀란 것이 사실 저는 80점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못했거든요. 봉화산도당곳이 작년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하나는 옮기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로 악사가 명예보유자로 물러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악사를 따르던 모든 악사가 다 나갔습니다. 현재 악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악사가.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전승교육사 한 분이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 돼서 작년 11월에 급환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현재는 악사나 무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겠지만 봉화산도당곳이 서울시 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축제적인 곳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을분들이나 보존회분들이 전승의 핵심이 될 만한 분을 심어달라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80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악사가 빠지는 과정,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많이 흔들렸지만 조사위원들의 평가에도 나와 있듯이 기량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마땅히 두 분이 부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화산도당곳이 꽤 잘 내려왔고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2년 동안 못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2년간의 전승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을분들이 꽤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점수로 보면 부결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곳의 정황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채워주기는 채워줘야 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마을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분의 점수가 더 낮아요. 이것이 제일

고민인 것입니다. 마을분들하고 봉화산도당곳은 마을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갖는 능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 당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은 점수가 낮은 분이 훨씬 잘 해요, 그분이. 그런데 훨씬 잘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표를 정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당장 이것 부결하게 되면 2년간 힘들어지거든요. 내년 음력 3월에 이분들이 실제 곳을 하는데 혹시 그때까지 평가를 유보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평가위원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 지정을 유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부만 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지만 저로서도 딱히 뭐라고 결정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점수가 안 돼서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정을 보게 되면 이 마을곳이 꽤 많이 흔들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고려하시고 또 하나 방법은 평가위원님의 말씀처럼 한 몇 달 동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하시는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니까?

○ 000 위원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게 지금 악사가 다 빠졌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 000 위원장

거기에 나왔던 그날 악사들은 누구예요?

○ 000 위원

그분들은 새로 여기 나오는 신청자 두 분이 데리고 온 악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에 한두 번씩 왔던 악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심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을분들은 그런 악사들은 원치

않고요. 차라리 무녀 한 분을, 그동안에 전승교육사 무녀가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런 무녀를 누구 잡아달라고 해서 이번에 무녀만 본 것이죠. 악사가 나가는 바람에, 사실 악사는 평가를 할 만한 악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 000 위원

그런데 전승교육사를 두 명 다 할 수는 없나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승교육사를 여러 명,

○ 000 위원

점수가 90이면 해달라고 제가 우기겠어요. 그런데 78점, 79점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하기 거북합니다.

○ 000 위원

점수 차이가 두 분이 별로 안 나는데.

○ 000 위원

아니요. 절대점수가 안 좋다는 거죠.

○ 000 위원

80점이 안 된다고요?

○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부결이 맞는데 여러 정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것이예요. 저는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해달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판단을 내리기 애매하다?

○ 000 위원

예.

○ 000 위원

두 분 다 할 수 있으면, 점수 말씀하셨지만 마을의례는 주민들이 그 마을 지역의 역사를 전승해온 것도 상당히 큰데요. 물론 이분들의 퍼포먼스의 전승이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점수로써 확인 가능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아예 그냥 그다음, 그다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점수치가 항상 있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평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공예나 기능에서 80점 기준과 이때의 맥락에 맞게 80점 기준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정량평가는 아니고 정성평가니까 0.(점) 몇 차이는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 000 위원

저는 조사하신 분들을 전부 다 믿는데요. 걱정이 그 중 두 분이 60점을 줬습니다. 이것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평균보다도, 다섯 분이 전부 다 굿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분이 왜 60점을 줬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보이거든요. 이것이 걸리는 거죠.

○ 000 위원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그분은 두 분한테 다 60점대를 줬네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

평균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경우에 80점 이상 넘기가,

○ 000 위원

사실 이분들이 만약에 악사만 잘 갖춰지고 했다면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 000 위원
유리한 조건에서.
- 000 위원
예. 약사가 없는 상태거든요.
- 000 위원장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안 하게 되면 흥 위원님께서서는 내년 3월에 한 번 더 보자는 건가요?
- 000 위원
아니요. 이것은 부결하게 되면 이분들은 2년 동안 기회가 없어요.
- 000 위원장
기회가 없는 거예요?
- 000 위원
재심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나요?
- 000 과장
명확하게 가결, 부결 이런 게 아니라 보류라는 절차도 있는 거고요.
- 000 위원
보류가 있으니까.
- 000 과장
예. 보류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심의하겠다.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겠다면 보류도 가능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여지껏 서울시에서 보유자나 전승교육사 심사를 보류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 000 위원장
보류가 없었지만 만들면 되는 거죠.
- 000 과장
가결, 부결이 아니고 보류도 전체 의견으로 가능합니다.
- 000 위원장
가부가 아니고 한 번 더 보자. 아쉬우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 000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서울시라든가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지원해 주자. 흔들리고 있으니까. 약사를 채워주고, 여기 나옵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위원들을 포함한 실사위원들이 내년에 가서 보완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검증하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있습니다.
- 000 위원
어디에 있죠?
- 000 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아래에 그 말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재심의?
- 000 위원
그렇죠. 3월에 가서 보자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약사들이 빠지고 너무 엉망이고 흔들리고 있어요.
- 000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류를 하고 약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 000 위원

그렇게 하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조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완 후 24년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제3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들이 인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000 과장

31페이지입니다. 심의안건 두 건은 심의완료 됐고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안건번호 2023-03-003입니다. 서울의 마을 제사에 대하여 기초 현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절차입니다. 2021년 7월에 무형문화재 종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산 산치성제와 정릉 대동산신제 두 개가 들어왔는데 2021년 11월에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로는 현재 서울시의 마을 제사가 100개가 넘는데 단독으로 이것 하나만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제사에 대해서 지정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기초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기관은 문화살림연구원 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216개가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총 10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5개, 기타까지 분류해놓은 것은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슷한 형태로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관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검토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조사보고서 보내드린 것 대략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4쪽, 35쪽에 쪽 나와있는데요. 전체 216건 중에서 102건에 대해서, 실제 조사표로는 100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4번에 보면 파란색으로 진하게 해놓은 강동에 갈산안산산치성제 그다음에 36쪽에 아랫말산신제 이 두 건이 그때 신청이 들어왔던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산신제의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울의 마을 제사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면 좋을지 제언되어 있는 것이 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단계 때는 산신제 같은 경우나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제사 관련된 단체들이 법인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정할 때는 어쨌든 자치구에서 향토문화재처럼 지정을 해서 조금 단계를 다져서 법인화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오게 되면 개별종목지정을 하든지 공동체 종목지정을 하든지 논의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지정을 할 경우 공동체 종목일지 개별단체종목일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 위원님들이 방향을 정해 주시고 추가적인 방향,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개별로 정할 것이냐, 단체냐 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전승보존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하니까, 일단 법인을 하려면. 그런 단계가 여기에 지금 100여 개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 해서 일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이미 봉화산도당굿하고 어디죠?

○ 000 과장

남이장군사당제요.

○ 000 위원장

남이장군사당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 000 주무관

5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 무형문화재 5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 000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마을치성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 000 위원장

그래요?

○ 000 위원

그리고 시도무형문화재 중에서 마을굿을 가장 많이 정한 데가 서울이예요. 사람 많고 돈 많은 데서 마을굿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신청한 데가 강동구와 정릉 두 군데는 사실 가치는 있지만 만약에 이 2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102군데 전부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운영무예하고 결련택견을 공동체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서울에만 마을치성하는 식으로 공동체 종목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지원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용산구나 성동구에서는 구 차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보면 서울시는 마을치성이 부군당제, 도당제, 산신제 세 가지인데요. 산신제가 그렇게 조사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산신제만큼은 정밀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전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녀보면 지금도 생각보다 꽤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것 하나가 최근에 12개가 새로 생겼어요. 마을의 유지들이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런 거로 보면 하나하나의 접근보다는 그분들의 의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종목을 염두에 두면서 후속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000 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에 공동체 종목에 대한 사항도 있나요?
- 000 위원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같이 있나요?
- 000 위원
예. 서울시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선택견하고 운영무예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 보유단체 없어요.
- 000 위원
조례 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000 위원
예,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트랙을 조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목을 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몇 개 중요한 것들은 단체종목으로 가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동체 종목으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100개는 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재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공동체로 지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 000 위원

단체종목이라도.

○ 000 위원장

개별? 마을마다?

○ 000 위원

하나하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단체로 지금 기지정된 것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정할 것은 아니고 서울시 쪽에서 판단을 뒀가 하겠죠.

○ 000 과장

지정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방식은 우선 지금 정하기보다는 이것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향토문화재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도록 하는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리가 잡힌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지정하는 방식 또는 개별 지정하는 방식을 개별로 검토해보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안사항이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공동체 전체로 지정할 경우에 전체 100개를 마을 제사로 지정할 경우에 살짝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 개별, 개별 지정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더라도 공동체 종목, 개별하는 방식 아니면 각 종목 자체를 공동체 종목이 아니라 일반 보유자가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식 등 개별 검토하시는 것도, 그때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 000 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가 단절될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승하는 노력이 문화재 지정 필수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각 구청마다 지원을 많이 얻어내는 것 같아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마을 제사가 단절될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각 구청별로 지원하도록 시 차원

에서 독려하는 공문을 하나 내려주시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강동구하고 정릉에서 2개가 이미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뭔가 답을 주기는 줘야 해요.

○ 000 위원장

아니, 여기에 신청은 안 올라왔었어요.

○ 000 위원

아니,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 종목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 000 위원장

31?

○ 000 위원

31페이지요. 31페이지 위에 추진경과 보면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주기는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신제에 대한 조사가 많이 없으니까 산신제를 정밀 조사해서 뭔가 결과를 주겠다고 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주기는 줘야 하니까요.

○ 000 위원장

답을 준다고 그러면 다음에 회의를 또 해야 하잖아요.

○ 000 위원

이것은 검토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죠. 위원회가 모여서요. 어떻습니까?

○ 000 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2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이것을 다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시는 절차로 갈 수도 있고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자고 하면 이 2개 또는 2개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000 위원

그렇죠. 산신제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 000 위원장

산신제만?

○ 000 위원

예.

○ 000 위원

기존에 부군당제나 도당제나 이런 것은 조사되어 있고 산신제는 없으니까 산신제만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판단하자는 거죠?

○ 000 위원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 000 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조사용역을 한번 해보고,

○ 000 위원

예. 그 2개가 포함되어 있는 산신제 전체를 조사해서,

○ 000 위원장

산신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000 과장

가능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조사해보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신제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위원회에 지정신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검토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에 대해서 보유자 인정조사하는 것을 사전검토한 안건입니다.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에 휘몰이잡가 부분에 보유자 지정이 됐었는데 이분이 2021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휘몰이잡가가 서울잡가로 변경을 해서 종목지정고시가 나갔고 이후에 보유자 공모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은 신청자 현황은 39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분이 계시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셔야 할 사항은 이것을 보유자 인정조사를 할 것이냐, 하면 조사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 000 위원장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김 위원님께서.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일단,

○ 000 과장

예. 조사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1번이고 조사를 한다면 조사위원을 추천하시는 안건입니다.

○ 000 위원

조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위원은 몇 명 정도로 추천을,

○ 000 주무관

다섯 분입니다.

- 000 위원
다섯 분?
- 000 위원
인정조사죠?
- 000 과장
예.
- 000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어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검토인데 사후조사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만 여기서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실기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
그러면 실기하시는 분에 000 선생님이나 000에 000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한 분 정도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후보명단이 한 분 빼고 다 50대 이론가거든요.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요.
- 000 주무관
저도 처음에 그때 말씀해 주셨던 000선생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가 쪽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혹시나 조금 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워서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 000 위원장

그쪽에 관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최근에 되신 분이 아니고 000 선생님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해오시던 분이기도 하고 000 선생님도 그렇고요.

○ 000 위원

배우거나 사제지간이나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제자의 제자한테 배웠다가 이런 식으로요.

○ 000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 000 위원

사제 직계만 아니면 000 선생님은 진짜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지금 제가 명단으로 봤을 때는 사제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요즘에 문제된 것이 000 선생님 유파 쪽으로만 지정이 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 선생님이 아니라 안비취, 이은주, 목계월 그러니까 이은주, 목계월 쪽의 선생님 한 분, 두 분이 들어가도 좋은데 000는 벌써 누구 하나 이렇게 거르니까 회피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 000 위원장

그렇죠.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조사를,

○ 000 위원

그런데 관계를 따지지만 저는 성악 전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조사위원은 여기에서 5명 모두를 선정해서 결론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하신 서위원하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세요.

○ 000 위원

이게 보유자 인정이기 때문에 전승교육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 000 위원

보유자셨으면 했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000 선생님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000 위원

예. 000이신 000 선생님.

○ 000 위원

000시고요. 사실 저는 000에서도 하나 들어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00 선생님 들어가시면. 000 선생님, 000에서. 옛날에는 경서도가 함께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어가도 탄탄하게 보이는데요.

○ 000 위원

서울시 지금 000되어 있는 000 선생님도 관계가 되니까 현행 보유자로 계시니까 실기인이시고 000 선생님 제자고 이러니까 연관성도 멀면서 관참으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누구라고 그랬죠?

○ 000 위원

000

- 000 위원
일단 1, 2, 3, 4 순위로 이렇게 하셔서 안 되신다고 하면 제척하고 이리
신다면 한 명씩 줄여서 섭외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000 위원장
한 분씩 더 말씀해 주세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실기인은 한 분만 모시는 걸로 할까요?
- 000 위원
아니요. 저는 적어도 둘, 셋은 들어가는 게 좋다고.
- 000 위원
실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지금 총 3명이에요.
- 000 위원
아, 그래요? 아까 5명이라고.
- 000 위원
저도 5명 중에 2명, 3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 000 주무관
두세 명 정도가 실기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000 위원장
3명 정도로? 그러면 3명이 지금 추천이 됐고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 더.
- 000 위원

곡창 말고 악사에서 이쪽에서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 000 위원

그런데 실기 쪽도 너무 가시면 점수가...

○ 000 위원

창 둘에 악사 하나에 이렇게 하는 게.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노래하시는 분 사이에 직계제자 아니고는 친분이 없을 수가 없죠. 같이 거의 살다시피 이 사람들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래서 실기 선생님의 비중이 너무 반 이상을 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두 분 정도는 정해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실기인으로 하고요.

○ 000 위원장

셋이 아니고 둘?

○ 000 주무관

그러면 실기인 두 분은 제가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나중에 해서 정하도록 하고 이론 봐주실 세 분만 오늘 정해 주시겠어요?

○ 000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시전문위원이 있네요.

○ 000 주무관

여기에 없는 분이라도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 000 위원

나중에 또 추천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 000 위원장

아니요. 여기서 해결해야 해요. 조사위원 후보 밑에 있는 분들 말고 더 말하는 거예요, 실기?

○ 000 주무관

그러니까 실기분들은 여기서 빠져있고요. 지금 여기 후보명단이나 아니면 더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사 후보명단에서 제척사유 되는 사람 없어요?

○ 000 위원

예. 여기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사께서 검토하셔서 결정하세요.

○ 000 과장

그러면 조사위원분들은 저희가 공정하게 정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 000 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000 선생님, 000 선생님, 000 선생님, 000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을 실기위원으로 모시고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이고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번호 2023-03-005이고요. 서도소리에 대해서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경과를 보면 작년 12년에 종로구를 통해서 박재순 선생님께서 배행

이곳을 서울특별시 종목으로 지정신청해달라고 왔던 거였고 올해 2월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종목지정 사전조사를 해보자고 와서 타당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분이 신청을 철회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하고 심의해서 결과를 낼 의무는 없고 어차피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종목분류방안에서만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후에 혹시 서도소리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조사의뢰를 했는데 철회를 했어요?

○ 000 과장

예. 본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해서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정은 지금 당장은 그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48페이지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유형별로 보시면 서울시무형문화재는 서도소리에 대해서는 이런 분류 체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 000 위원장

앞으로 있지도 않은 거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나? 올라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000 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갑자기 종목지정 철회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

○ 000 위원장

다음에 오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 000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갈래를 구분하자는 의견이잖아요. ABC위원들이. '서도소리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특징을 잘 살려서 전승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잡가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긴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 다 묶어버린 것과는 또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입창이 말하자면 휘몰이잡가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좌창이 긴잡가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과 서울잡가 경우가 좀 사례가 달라지는 부분을 짚고 인식하고 나중에라도 뭔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00 위원

A위원이 국가 거를 그냥 범용하신 사례이고요. B위원은 약간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B는 제외하겠습니다. C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국가의 경우에 서도입창을 선소리산타령 종목에서 2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경기하고 서도를. 그래서 사실 서도가 제대로 전승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김광숙 선생님 서도소리 쪽에서 선소리산타령 전승하실 때 훨씬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위원 (안)에 저 잡가, 민요, 저 잡가 안에 좌창, 입창 다 묶어서, 배뱅이굿만 따로 놓고 나머지는 서도소리로 묶어서 가는 (안)이 가장 경기잡가하고도 유사하게 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이라도 들어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겠고 여기에 우리 간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거기는 더 짧죠? 혹시나 염두에 뒀다가 내년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해서 참고할 수 있겠고 올해 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께서, 특히 올해 임명 받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잘 기억했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이 더 있습니까?

○ 000 과장

간사가 사실 초보자라서 혹시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2023년 9월 전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